



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

[시행 2011. 10. 10.] [고용노동부훈령 제46호, 2011. 10. 10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국제협력담당관실), 044-202-7130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·활용하고,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 공함으로써 고용·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지침은 국제노동기구(ILO 제네바 본부, 방콕 지역사무소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및 세계은행 (WB) 등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고용노동부 직원(이하 "파견관"이라 한다)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파견기간) ① 공무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1년을 연장 할 수 있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을 선정할 때 파견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상황 등 보고) ① 파견관은 파견기간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고용·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파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 기구의 고용·노동동향, 관련 경제·사회 동향이나 파견관의 업무·활동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파견관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파견기간 중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국제협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주요 고용·노동정책 등 중요 한 사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관련 실장·정책관에게 통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후관리)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이 귀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제관련업무 또는 파견기간 중 수임활동 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11-46호, 2011.10.10.>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2011년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 1분기 및 2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